

西紀 1984 年 8 月 1 日 制定施行
西紀 1984 年 9 月 28 日 改正施行
西紀 1987 年 7 月 10 日 改正施行
西紀 1988 年 1 月 1 日 改正施行
西紀 1989 年 3 月 30 日 改正施行
西紀 1990 年 4 月 30 日 改正施行
西紀 1990 年 9 月 1 日 改正施行
西紀 1993 年 6 月 2 日 改正施行
西紀 1994 年 12 月 2 日 改正
1995 年 1 月 1 日 施行
西紀 1995 年 2 月 5 日 改正
1995 年 3 月 1 日 施行
西紀 1996 年 12 月 19 日 改正
1997 年 1 月 1 日 施行
西紀 1997 年 12 月 29 日 改正
1998 年 1 月 1 日 施行
西紀 1998 年 7 月 15 日 改正施行
西紀 1998 年 12 月 26 日 改正
西紀 1999 年 1 月 1 日 施行
西紀 1999 年 3 月 23 日 改正施行
西紀 2000 年 12 月 21 日 改正
西紀 2001 年 1 月 1 日 施行
西紀 2002 年 8 月 8 日 改正施行
西紀 2016 年 8 月 1 日 改正施行

福 祉 會 規 定

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

목 차

제 1 장 ,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제 2 조 (명 칭)

제 3 조 (사 무 소)

제 4 조 (사 업)

제 2 장 ,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제 6 조 (권 리)

제 7 조 (의 무)

제 3 장 , 임 원

제 8 조 (임 원)

제 9 조 (임 . 직원의 선임)

제 10 조 (직 무)

제 4 장 , 회 의

제 11 조 (심의위원회)

제 12 조 (회 의)

제 13 조 (회 의 록)

제 5 장 , 자 산 및 회 계

제 14 조 (자 산)

제 15 조 (운 영 비)

제 16 조 (사업년도)

제 6 장 , 복지금 지급제한

제 17 조 (적용범위)

제 18 조 (용어의 정의)

제 19 조 (지급 제한)

제 20 조 (지급액의 결정)

제 21 조 (복지금 지급)

제 22 조 (지급의 제한)

제 23 조 (복지기금 및 복지금)

제 24 조 (규칙의 제정)

제 25 조 (복지회 해산과 청산인)

제 7 장 , 부 칙

제 26 조 (시 행 일)

제 27 조 (경과조치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직계존비속의 애. 경사가 있을 시 축. 조의 복지금을 지급하고 이직회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 칭)

본 회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(이하 “복지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3 조 (사 무 소)

본 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 업)

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회원 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.
2. 회원 또는 직계존비 속의 사망 시 조의금 지불에 관한 사항.
3. 회원 또는 직계존비 속의 축의금 지급에 관한 사항.
4. 회원 사망 시 유족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.
5. 기타 회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.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1. 본 회 회원은 개인택시 면허취득자가 되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2.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면허 취소 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.

제 6 조 (권 리)

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
1. 본 회에서 지급되는 복지금을 받을 권리.
2. 복지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서류열람의 권리.

제 7 조 (의 무)

본 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.

1.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.
2. 본 회의 부과금 및 운영비 납입.
3. 본 회의 조회 및 질문에 대한 회답.

제 8 조 (임 원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.
2. 부회장 1인
3. 심의위원 10인 이내
4. 감사 2인
5. 직원 약간명

제 9 조 (임.직원의 선임)

1.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.
2. 부회장 및 심의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3. 감사는 조합 감사가 겸임한다.
4.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 (직 무)

1. 회장은 본 회 임무를 통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. 감사는 본 회에 관하여 감사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.
4.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.
5.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.

제 11 조 (심의위원회)

1.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2. 심의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
3.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- ① 이사회에 제출할 규정 개정 심의(안)
- ② 복지금 지급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- ③ 회원이 부담할 부과액 결정 및 부과방법
- ④ 이사회에 위임 사항 처리
- ⑤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2 조 (회 의)

1. 심의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2.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.
3. 부회장 및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없다.

제 13 조 (회의록)

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심의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관 비치한다.

1. 회의 일수 및 장소
2.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 서명
3. 부의안건
4. 의사진행 요령
5. 기타 참고사항

제 14 조 (자 산)

본 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.

1. 본 회에 적립하여 있는 금액
2. 회원의 부과금 및 특별회비
3. 본 회 기금에서 생한 수입
4. 보조 및 기부에 의한 재산
5. 기타수입

제 15 조 (운영비)

매년 복지회에서 세입, 세출예산(안)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 승인을 득 하여 운영토록 한다.

- 3 -

제 16 조 (사업년도)

1.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본 회의 결산은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적용범위)

1. 이직위로금은 회원의 자격상실(양도 또는 취소)시 지급한다.
2. 축의금은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회갑 시에 지급한다.
3. 조의금은 회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 지급한다.
4. 유족위로금은 회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다.

제 18 조 (용어의 정의)

1. 복지금이라 함은 이직위로금, 축, 조의금, 유족위로금을 말한다.
2. 사망이라 함은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순직, 사고사, 병사, 변사 단, 자살은 회원에게만 적용한다.
3. 근속 년한이라 함은 본 회 규정이 시행되어 월례회비를 부과 징수한 날로부터 면허양도 및 면허취소일(면허반납 포함)까지를 말한다.
(면허 휴지는 제외)

제 19 조 (지급제한)

1. 지급기준은 점수제로 한다.
2. 근속 년한을 기준으로 한다.
3. 조합 또는 사회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감점한다.

제 20 조 (지급액의 결정)

1. 근속월수 1 개월에 0.5 점으로 하고 1 점당 지급액은 회원 1 인당 5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2. 제 1 항의 회원 정수는 최고 4,100 명을 상한선으로 하며 4,100 명을 초과하는 회원에게 할당되어 부과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.

3.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공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 점을 감점하되 반복 불이행시마다 2 점씩 추가 감점한다.

4. 근속기간 중 공과금(조합비 및 월례비등)을 계속하여 4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다음에 준하여 감점한다.

- 4 -

① 4 개월연체시 : 조합비 5 점 , 복지회비 5 점 (10 점)

② 5 개월부터 매 1 개월당 : 조합비 2 점 , 복지회비 2 점 (4 점)

5. 본 규정 제 19 조 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저해 회원으로 결의되었을 경우 1 회 10 점 감점하되 추가 결의시마다 5 점씩 추가 감점 한다.

6. 동조 제 3 항 및 제 5 항은 사유발생의 익일부터 3 년, 제 4 항은 연체된 공과금을 완납한 날의 익일부터 1 년이 경과하면 감점은 면제한다.

제 21 조 (복지금 지급)

1. 축의금은 회원의 회갑, 결혼시 10 만원

회원의 부모 회갑시 5 만원

회원의 자녀결혼시 5 만원

2. 조의금은 회원 사망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 중 부.모.처.자 사망시 다음에 준한다.

① 회원 본인사망시 20 만원 및 조화

② 부.모 사망시 10 만원 및 조화

③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20 만원 및 조화

④ 회원의 자녀사망시 10 만원 및 조화

3. 동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축. 조의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 년이

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서 신청 후 1 주일이내 지급하고 제 20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. 유족위로금은 후지급한다.

4. 복지금은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지회 소정의 절차와 심의결과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정의 수령인에게 지급한다.

5. 복지금 신청자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1 개월 이내에 재심은 청구 할 수 있으나, 3심 청구는 할 수 없다.

제 22 조 (지급의 제한)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회원 또는 회원 가족의 신청이 없을 때
단, 축. 조의금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2. 사유발생일 현재 5 개월 이상 공과금 미납자

- 5 -

단, 축. 조의금은 제공과금 완납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지급한다.

3. 축,조의금 지급소멸기한을 1 년으로 하며,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경과후 신청건에
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23 조 (복지기금 및 복지금)

1. 복지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 회원은 일괄 5 만원을 소급해서 징수한다.
2. 전항의 적립금은 환불한다.
3. 복지 위로금 계산 방법에 의해 지급한다.
4. 복지회비는 정액제로 정하여 징수하며 금액 결정은 매년 마지막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24 조 (규칙의 제정)

본 규정에 필요한 본 회의 규칙은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 25 조 (복지회 해산과 청산인)

1. 심의위원회 결의로서 해산하고 청산인은 당시 회장이 된다.
2. 해산 시 복지회 자산은 전 회원에게 균등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규정 제 22 조(지급제한)3 항 사유발생일 현재 5 개월 이상 공과금 미납자는 제 23 조 3 항에 준한다.

제 26 조 (시 행 일)

본 규정은 1984 년 8 월 1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84 년 9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87 년 7 월 1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88 년 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89 년 3 월 3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0 년 4 월 3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0 년 9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3 년 6 월 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4 년 12 월 2 일부터 개정하여,

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5 년 2 월 5 일부터 개정하여,

- 6 -

199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6 년 12 월 19 일부터 개정하여,

199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7 년 12 월 29 일부터 개정하여,

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8 년 7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8 년 12 월 26 일부터 개정하여,

19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9 년 3 월 23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0 년 12 월 21 일부터 개정하여,

200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2 년 8 월 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6 년 2 월 2 일부터 개정하여,

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